## 전문위원 검토보고

O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 1．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 2．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O 제출일자：2013년 08월 26일
O 회부일자 ：2013년 08월 28일

## 3．제안이유

（가칭）삼원유치원 설립예정지 위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사 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3 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수립 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4．주요내용

## 가．재산의 취득（위치변경）

（단위 ： $\mathrm{m}^{2}$ ，천원）

| 기관명 | 구분 | 사 업 명 | 수 량 | 금 액 |
| :---: | :---: | :---: | :---: | :---: |
| 가칭）삼원유치원 | 토지 | 가칭）삼원유치원 설립부지 위치 변경 <br> （삼원초 부지 $\rightarrow$ 현 국원고 유휴부지） | 1,782 | $3,247,000$ |

## 나. 춰득대상 재산 목록

ㅁ 당초취득
(단위 : $\mathrm{m}^{2}$, 천원)

| 재 산 의 표 시 |  |  |  | 추정금액 <br> (천원) | $\begin{aligned} & \text { 취 득 } \\ & \text { 시 기 } \end{aligned}$ | 추득 사유 | $\begin{aligned} & \text { 치 득 } \\ & \text { 소유자 } \end{aligned}$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기관명 | 구분 | 소재지 | 수량 ( $\mathrm{m}^{2}$ ) |  |  |  |  |  |
| 가칭) 삼원유치원 | 토지 | 충주시 보ㅇㅏㅏㄷㅗ | 0.00 | 0 | 상반기 | 가칭)삼원유치원사 신축 | 교육감 | 도면1 |
|  | 건물 | (현삼원초) | 1,782.00 | 2,929,000 |  |  |  |  |
| 합 계 |  |  | 1,782.00 | 2,929,000 |  |  |  |  |

ㅁ면경춰득
(단위: $\mathrm{m}^{2}$, 천원)

| 재 산 의 표 시 |  |  |  | 추정금액 (천원) | $\begin{aligned} & \text { 취 득 } \\ & \text { 시 기 } \end{aligned}$ | 변경 사유 | $\begin{aligned} & \text { 추 득 } \\ & \text { 소유자 } \end{aligned}$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기관명 | 구분 | 소재지 | 수량 ( $\mathrm{m}^{2}$ ) |  |  |  |  |  |
| $\begin{gathered} \text { 가칭) } \\ \text { 삼원유치원 } \end{gathered}$ | 토지 | 충주시 | 0.00 | 0 | $\begin{aligned} & 2014 . \\ & \text { 하반기 } \end{aligned}$ | 가칭)삼원유치원사 설립 부지 위치 변경 <br> - 단설유치원의 전문성 및 지율성 확보 | 교육감 | 도면1 |
|  | 건물 | $\begin{gathered} \text { 외2필지 } \\ (\text { 현국원고) } \end{gathered}$ | 1,782.00 | $\begin{array}{r} 3,247,000 \\ \binom{\text { (2) } 31.1 \text { 회추경 }}{\text { 시설비 증액 })} \end{array}$ |  |  |  |  |
| 합 계 |  |  | 1,782.00 | 3,247,000 |  |  |  |  |

## ㅁ변경사유

(가칭)삼원유치원의 설립여건 변화와 단설유치원의 전문성 및 자율 성 확보 둥을 위하여 현 국원고 유휴지로 변경하고자 함

## 5. 검토의 견

본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가칭)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의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검토 의견은 동 안건의 내용으로 대체함

## 관 계 법 령 발 췌

## $\square$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 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 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관리계획을 변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2．4＞
（2）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9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 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square$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 7 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1）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기부채납，무 상 양수，환지（換地），무상 귀속，교환，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및 처분（매각，양 여，교환，무상 귀속，건물의 멸실，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 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이 경 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둥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 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 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 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 억 원)
2. 토지의 경우 1 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 건당 6 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 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 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4.24]

## $\square$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13 조(공유재산 관리계획) (1) 법 제 10 조 및 영 제 7 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 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공유재산콴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 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